

# 서 면 답 변 서

## ○ 조규영 의원

(질의요지)

- 서울광장을 진정한 주인인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안 관련
  1. 현재 서울광장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전환
  2.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사용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 행위를 추가
  3. 시장이 광장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
  4. 조례 제8조에 명기된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
  5. 광장사용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

(답 변)

- 서울광장은 불특정 일반시민의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,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 지원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'04.5월 조성되었음.
  - 특히,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으로서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률 (지방자치법 제15조,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7조)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로 관리·운영하고 있음.
-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,
  1. 현재 서울광장 사용허가제의 사용신고제 전환은,
    - 현행 허가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광장조성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유지를 위한 것이며,
    - 신고제 전환시 현재의 여건상 신고자의 난립으로 광장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물론, 광장조성의 목적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.
  2.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 행위를 추가는,
    - 집회의 경우,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적법한 집회를 동 조례로 금지할 수 없고, 또한 동 조례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법의 적용을 배제 할 수는 없음.
    - 따라서 서울광장에 관한 조례에 의한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

- 집시법을 독립적으로 집행하는데 제한이 없음.
3.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함.
    - 현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(7월말 공포 예정) 되었으며,
    - 향후 광장시민위원회가 구성·운영되면 중립적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 4. 추상적인 부득이한 사유의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필요
    - 조례 제8조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는,
      - 허가조건을 포함하여, 허가당시 향후 발생될 돌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명기한 규정이며,
      - 실제 이러한 사례는 사전 협의조정되어 변경되는 일은 거의 없음 (‘04.5월 광장조성 이후 단 한건도 없었음)
  5. 광장사용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은,
    - 서울광장의 사용은 시민 누구라도 항상 자유롭게 사용토록 열려 있음.
      - 다만, 배타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있음.
    - 이는 수준높은 문화행사 및 공익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에 부응키 위한 것으로 차별적 운영과는 다른 차원임.
- 참고로 위내용을 포함하여 지난 6.10 주민발의로 서울광장의 조례개정 청구가 접수되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.
- ‘09. 6. 10     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접수
  - ‘09. 6. 18     대표자 증명서 교부
  - ‘09. 6. 19     대표자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공표
  - ‘09. 6. 24     위임신고서 접수(1차 1,125명)
  - ‘09. 6. 26     위임신고서 접수(2차 561명, 누계1,686명)
  - ‘09. 7. 14     위임신고증 교부(1,556명)
- 향후 정해진 기간내 적법요건을 갖춘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면,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, 이 과정에서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시의회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이 이루어질 것임.